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2. 14 선고 2022가단126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나307428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2. 14 선고 2022가단12681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1. 5. 20. 접수 제269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과정

-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7. 5.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D은 2017. 5. 3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3) C은 2021. 4. 26. 신탁재산의 처분으로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21. 5.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공사대금청구 소송 진행 과정

원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가합3199 공사대금 사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연립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일부 공사대금 3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법원은 2022. 7. 22.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2나24293) 계류 중이다(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8. 28. D과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연립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8. 5. 14.부터 2019. 5. 13.까지, 공사대금을 43억 8,67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부터 2020. 8. 31.까지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D은 원고에게 기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관련 소송에서 그 중 일부로서 3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해지에 따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D과 피고는 주소가 동일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E이 D의 대표자 F의 사위로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바,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형식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전되도록 한 것은 D의 책임재산을 소멸시켜서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에 대하여 3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C에 신탁된 부동산으로 C의 신탁재산 처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위탁자가 위와 같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금은 모두 우선수익자에게 배당되었고, 위탁자인 D에게 배당된 금액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탁자인 D의 책임재산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규

별지